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

①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개요

- 본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도록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음

명 칭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관 할	대구·경북지역
담당자 연락처	053. 620-3873

- ※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익일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②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

- 위탁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

1. **상담** :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함.

- 상담 시간 : 월~금(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 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필요 시 방문 상담

- ① 온라인 상담 : 메일(device01@ymc.yu.ac.kr)을 통한 상담 의뢰

- ② 전화 상담 : 053. 620-3873

- ③ 방문 상담 : 기관 요청 시 방문하여 상담 제공

- 상담자 :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 상담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상담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함.(위탁기관의 요구 또는 필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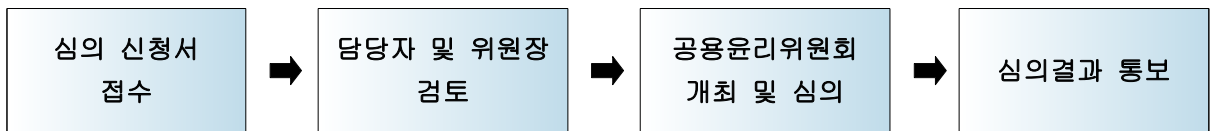
따라 기록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

2. 교육 :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방법 : 2회/년 이상 교육
- 제공 시기 :
 - 1회 이상 집합교육
 - 협약 후 1달 이내, 위탁기관 요청 시 추가 교육(협의하여 일정 계획)
- 교육 내용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규정과 의료윤리에 관한 교육 등 위탁기관의 인력 및 구성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실시
- 교육 시행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 내용 및 이수자 명단 등을 기록하고 관리

3. 심의 :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상담 중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심의 신청 절차



▪ 회의 개최 기준

- ① 위원회 심의 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이 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심의 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 개최한다.

▪ 회의 방법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심의 사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② 위원회는 연명의료윤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경위를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③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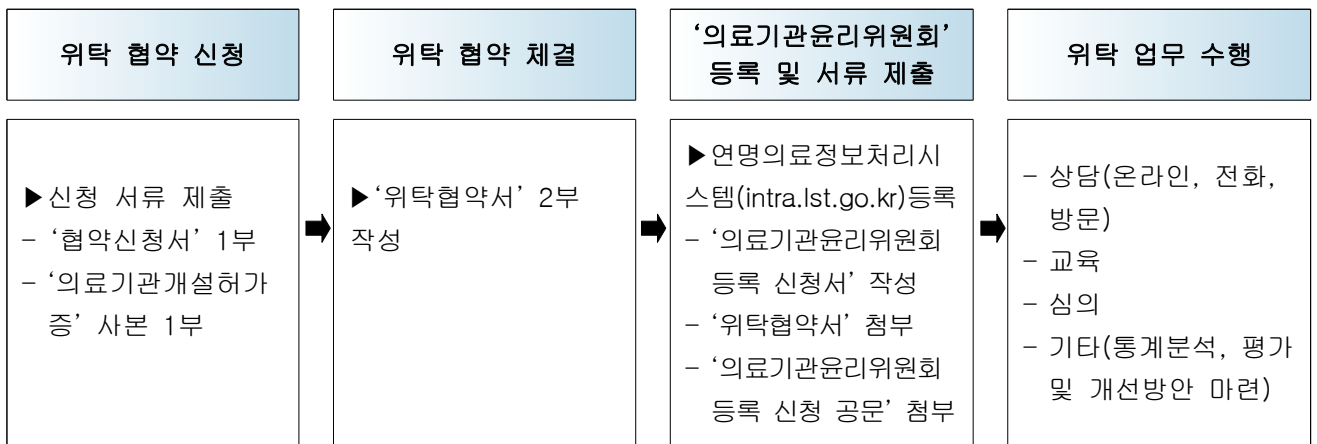
▪ 심의 결과 통보

심의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탁기관 및 심의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후 위원장 승인된 심의 결과 통보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한다.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4. 기타

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③ 협약 체결 기준 및 절차



○ 협약 기간

협약 기간은 위탁기관의 기관장과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절차

신규 협약 신청 ➡ 서류검토 ➡ 검토결과 안내 ➡ 협약체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이메일) 또는 원본서류 우편 신청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협약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진료과목, 병상 수 및 의료진 규모 등 위탁기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협약체결방법**

위탁기관장 및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2부(각 1부씩 보관) 작성

- (제출방법)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10층 1058호 호스피스실

4 위탁 협약 비용 납부

○ **협약 비용** : 기본 200만원/년 (심의 의뢰 시, 1건당 15만원 추가)

구분	업무	내용	비고
기본 (200만원)	상담	- 업무시간 중 수시 응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 실시)	15만원*12개월=180만원
	관리	- 공용윤리위원회 기본 지침 교육 - 자료 및 정보 공유 및 제공 - 기타 연명의료관련 기관 문의응대 등	
	교육	-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20만원
추가	심의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담당의사 교체	의뢰 건당 15만원

※ 병상수가 3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납부 기간)**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납부

※ 추가 심의건 발생 시 해당 심의 접수 완료 후 심의비 청구

○ **(입금 계좌)**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02)778-756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기관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구분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진료과목			
의사 수		병상 수	

담 당 자 정 보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협 약 사 항	
협약신청사유	
협약신청기간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년

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협약신청의료기관장: _____ (인)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_____ (위탁기관)과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

- 가.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
- 나.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다.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라.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마.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 【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비용】

위탁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_____ 의 장

**영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 _____ (서 명)

성명 : _____ (서 명)